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131
----------	-------

제안연월일 : 2015. 12. .

제안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발의자	발의일자	경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12. 6. 7.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12. 7. 27.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12. 9. 5.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13. 3. 22.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13. 3. 25.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14. 11. 12.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15. 6. 5.	제334회(임시회) 2015. 6. 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영의원	15. 6. 9.	제334회(임시회) 2015. 6. 1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15. 6. 15.	제334회(임시회) 2015. 6. 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15. 6. 17.	제334회(임시회) 2015. 6. 1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15. 6. 18.	제334회(임시회) 2015. 6. 1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15. 6. 19.	제334회(임시회) 2015. 6. 2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15. 7. 13.	제335회(임시회) 2015.7.1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윤조의원	15. 7. 24.	제335회(임시회) 2015.7.2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

제335회(임시회) 제8차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2015. 7. 17.), 제10차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2015. 7. 28.)는 위 1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36회(임시회) 제1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15. 8. 18.)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비용추계서 별도 첨부

2. 대안의 제안이유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 등을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도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

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치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행정망인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전투표소 통신망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정성 및 보안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국가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경우 1층에 민원실이 있어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장애인 및 노약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의 투표편의를 높이고 통신장애나 해킹 등에 의한 안정성 및 보안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시 재외선거는 재외국민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표율은 예상 선거인수 223만 3,193명 대비 2.53%(5만 6,456명)에 불과하였는 바,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허용 및 작성된 재외선거인 명부를 계속 사용하는 이른바 영구명부제를 도입하며, 공관 외의 장소에 4만명 마다 1개소씩 최대 2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여론조사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는바,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여론조사기관, 후보자, 그리고 언론 등에 대해서 엄단하여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시대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여론조사와 관련되어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할 가능성이 농후한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및 언론인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보도 등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하여 새로운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그 밖에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기명하고 날인하는 방법 외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선인 결정 후 1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을 송부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 위임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거여론조사가 상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신고 및 등록의무를 상시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의8, 제108조, 제256조 및 제261조).

나.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후보가 제한되는 언

론인의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3제8항 및 제53조제1항).

다.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함(안 제49조제3항).

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 1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을 송부하도록 함(안 제49조제9항).

마.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해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0조제2항 및 제256조제5항제10호의2 신설).

바.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의제기 확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함(안 제110조의2 신설).

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부대 등 밀집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제5항 신설).

야. 재외선거인명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2회 이상 계속하여 선거에 미참여한 재외선거인은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함(안 제218조의5, 제218조의6, 제218조의8, 제218조의12, 제218조의13 및 제218조의19).

자.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 첨부 규정을 삭제함(안 제218조의4, 제218조의5, 제218조의6).

차.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재외투표소관리자로 하여금 투표관리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17, 제218조의18, 제218조의19, 제218조의20, 제218조의21 및 제218조의22).

카.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에 관한 사항 외에 가족관계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 중 인격을 삭제함(안 제250조제1항).

타.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언론인 등의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 보도 등의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여론조

사 결과 왜곡 공표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언론인 등의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 보도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5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8제1항 중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을 “하는 선거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을 “하는 선거에 관한”으로, “선거일 전 200일까지 공표하여야”를 “공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을 “선거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24조의3제8항 중 “대통령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을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선인결정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제4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제8호 중 “大統領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0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으로, “정하는”을 “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輿論調査機關·團體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調査者의 身分을”을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調査依頼者와 調査機關·團體名, 被調査者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을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제7항”을 “제7항”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을 “선거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을 “선거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청을”을 “요구를”로 한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소속 정당, 이의제기자,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집·수정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의제기서의 양식, 제출서류·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 안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18조의3제2항제1호 중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변경등록신청과”로 한다.

제2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고 여권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려는 사람은 여권사본을 덧붙이지 아니하고, 외국에 파병되었거나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파병될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파병군인”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이나 소속 부대장의 확인서로 여권사본을 갈음할 수 있다.”를 “적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권번호

⑤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서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 중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2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으로 하고,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이라 한다)”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있으며, 대리하여 제출하는 사람은 자신의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를 “매년 1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218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제218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로 본다.”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으로, “여권번호”는 “여권번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또는 모의 성명”으로 본다.”로 한다.

②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어야 한다.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또는 모의 성명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그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8조의6제1항 중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여부, 덧붙여야 할 서류”를 “여부”로, “제218조의5제1항”을 “제218조의5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18조의8제1항 전단 중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을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로, “재외투표관리관이”를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와 재외투표관리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한”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를 “선거일 전 150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의 정비를”로, “해당 정보에 대하여”를 “해당 정보를”로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그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중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그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218조의12의 제목 중 “기간”을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으로 한다.

제218조의13제1항 중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로 한다.

제218조의17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를 “재외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후단 중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으로”를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로”로 한다.

이 경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에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국민수가 4만명을 넘으면 이후 매 4만명까지마다 1개소씩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 수는 2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재외투표소관리자로 하여금 투표관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18제1항 전단 중 “책임위원으로”를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이하 “책임위원등”이라 한다)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책임위원”을 “책임위원등”으로 한다.

제218조의19제1항 단서 중 “제2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같은 조 제3항”을 “재외선거인은 제218조의5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위원은”을 “책임위원등은”으로 한다.

제218조의20제1항 및 제6항 중 “책임위원”을 각각 “책임위원등”으로 한다.

제218조의21제1항 중 “책임위원”을 “책임위원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외투표의 인계, 제2항에”로 한다.

다만, 제218조의17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외투표소는 공관과의 거리 등의 사유로 매일의 재외투표를 인계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재외투표소 운영기간 종료 후 그 기간 중의 재외투표를 일괄 하여 인계할 수 있다.

제218조의22제1항 및 제2항 중 “책임위원”을 각각 “책임위원등”으로 한다.

제218조의24제5항 후단 중 ““투표참관인”은”을 ““재외투표소별로”는 “개표소별로”로, “투표참관인”은”으로 한다.

제241조제1항 중 “제218조의17제7항”을 “제218조의17제9항”으로 한다.

제247조제1항 중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로 한다.

제250조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候

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의 出生地·身分·職業·經歷等·財産·人格·행위·所屬團體 등에 관하여”를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2조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1항) 중 “제96조·제98조”를 “제98조”로 한다.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 ① 제9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파목 중 “아니한 자,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 중 “제218조의17제7항”을 각각 “제218조의17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자

제2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8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자

3. 제108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여론조사 의뢰자를 말한다.

4. 제108조제8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8제1항·

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8조제3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2016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한 대통령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를 제218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로 본다.

제3조(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제218조의4 및 제21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으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

1. (생략)

2.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⑧ (생략)

⑨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 ⑫ (생략)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 ⑦ (생략)

⑧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

--.

1. (현행과 같음)

2. -----선거에 관한-----

⑧ (현행과 같음)

⑨ -----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

⑩ ~ ⑫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② (생략)

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 [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⑨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當選人決定후 15日 이내에 당해 當選人이 第4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한 登錄對象財産에 관한 申告書의 寫本을 「공직자윤리법」 第9條(公職者倫理委員會)의 規定에 의한 해당 公職者倫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⑩ ~ ⑮ (생략)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
명-----

-----.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선인 결정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제4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⑩ ~ ⑮ (현행과 같음)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

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 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⑧ -----

-----.

1. 제7항-----

-----선거에 관
한-----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 · 2. (생략)

⑩ · ⑪ (생략)

第110條(候補者 등의 誹謗禁止)

누구든지 選舉運動을 위하여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候補者의 配偶者와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의 出生地·身分·職業·經歷等·財産·人格·행위·所屬團體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公表할

2. -----

-----선거에 관한-----

⑨ -----

-----요구를-----

-----.

1. · 2. (현행과 같음)

⑩ · ⑪ (현행과 같음)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私生活을 誹謗할 수 없다. 다만, 眞實한 사실로서 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소속 정당, 이의제기자,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집·수정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의제기서의 양식, 제출 서류·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를 그 관할구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⑤ (생략)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① (생략)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다음 각

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 안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2. ~ 5. (생략)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여권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려는 사람은 여권사본을 덧붙이지 아니하고, 외국에 파병되었거나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파병될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파병군인”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이나 소속 부대장의 확인서로 여권사본을 갈음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③ · ④ (생략)

<신설>

-----.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과-----

--

2. ~ 5.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적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여권번호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

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서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 중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① -----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이라 한다)-----

1. -----

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대리하여 제출하는 사람은 자신의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 3. (생략)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여권사본과 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이 경우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 . ----

----- 있다.

2. · 3. (현행과 같음)

②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하여 공고한다.
-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

1. ~ 4. (현행과 같음)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또는 모의 성명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그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매년 1월 31일까지-----

<삭제>

제218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① 재외투표관리관이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덧붙여야 할 서류, 정당한 신고·신청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제218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를, 제21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각각 작성(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또는 모의 성명”으로 본다.

제218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①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변경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여부-----

-----제218조의5제1항 및 제3항-----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 일-----

40일까지 10일간 재외투표관리관이 송부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신 설>

② 거짓으로 재외선거인 등록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
외선거인명부와 재외투표관리
관이-----.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
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
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그 재외
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
에 올라 있는 선거인 중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
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그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여
야 한다.

③ -----재외선거인 등

을 신청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릴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에 대하여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 ⑤ (생략)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간 등의 단축) 제218조의4부터 제218조의11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록신청을 한-----

-----.

④ -----

-----선거일 전 150

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해

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

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

정된 재외선거인명부의 정비

를-----

-----해당 정보를-----

-----.

1. ~ 4.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

경우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2. (생략)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
의 확정과 송부) ① 재외선거
인명부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 ~ ④ (생략)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
치·운영) ① 재외선거관리위
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하 이 장
에서 “재외투표기간”이라 한
다)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
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재외선거인 등록신
청기한-----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

2.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
의 확정과 송부) ① -----

-----국외부재자신고인명
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
치·운영) ① -----

<후단 신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신설>

이 경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에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국민수가 4만명을 넘으면 이후 매 4만명까지마다 1개소씩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2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
-----재외투표소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

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책임위원”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글성명이 모두 나타나야 한다)한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교부한다.

③ ~ ④ (생략)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

-----.

② -----책임위원등은-----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① -----책임위원등-----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책임위원등-----

-----.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① -----책임위원등-----

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第250條(虛偽事實公表罪) ① 당

선되거나 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姊妹의 出生地·身分·職業·經歷等·財産·人格·행위·所屬團體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를 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5년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③ (생략)

第252條(放送·新聞 등 不正移用罪) <신 설>

-----.

② (현행과 같음)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96조제2항을 위반한

<신 설>

① 제82조의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6조·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한 자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제98조-----

-----.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1. (현행과 같음)

2.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현행과 같음)

③-----

하·거 (생략)

2. 選舉秩序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 라. (생략)

마. 제163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소(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들어가거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바. 제166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 규정을 위반한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

하·거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218조의17제9항-----

바. -----제218조의17제9항-----

사. -----제218조의17제9항-----

람

아. (생략)

3. · 4. (생략)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徵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10. (생략)

<신설>

11. · 12.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생략)

② 제108조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 또는 보도한 자(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아.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자

11. · 12.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8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자

3. 제108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여론조사 의뢰자를 말한다.

4. 제108조제8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③ ~ ⑪ (생략)

③ ~ ⑪ (현행과 같음)